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숙박업 이용매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인여부 확인 의무 부과 〉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395호)

2022.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숙박업 이용매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인여부 확인 의무 및 과태료 부과(안 제44조의4 및 제76조제3항제3의2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현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2. 1. 14.

다. 회 부 일 : 2022. 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숙박업 이용매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인여부 확인 의무 및 과태료 부과(안 제44조의4 및 제76조제3항제3의2호)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매개하려는 경우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2조의4 및 제76조제3항제3의2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4(이용자의 성인여부 확인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의 영업소를 말한다)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현행	개정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25. (생략) ④ (생략)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2조의4를 위반하여 이</u> <u>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u> <u>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u> <u>한 자</u> 4.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숙박업소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제44조의4 및 제76조제3항제3의2호).
- 최근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하여 숙박업소를 예약해 남녀혼숙을 하거나 집을 나와 머무는 등 비행·탈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나,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첫째,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숙박업’에 대해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하여 예약시부터 성인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숙박업소 이용권의 구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이용 자체를 어렵게 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둘째,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숙박업 운영 업주로 하여금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되, ‘청소년 남녀혼숙 등 풍기문란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토록 그 출입

제한 요건을 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 남녀혼숙 등 풍기문란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예약단계가 아닌 출입과정에서 업주 및 종업원의 동행자 확인 등 대면확인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예약단계에서부터 성인 여부 확인을 통해 청소년의 이용이 어렵게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청소년의 숙박 업소 출입 자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숙박플랫폼 사업자(에어비앤비, 부킹, 익스피디아 등)의 경우 성인 인증 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우려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함.

문 의 처
02)6788-5230